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46 발의연월일: 2021. 1. 21.

발 의 자: 송언석 · 구자근 · 김은혜

곽상도 • 김정재 • 박덕흠

추경호 · 허은아 · 임이자

권명호 · 김용판 · 태영호

정희용 · 김성원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·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·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,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한 현행 법령을 보면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, 국토교통부렁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하게 다단계적 위임입법 형식을취함으로써 법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• 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• 변경

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(안 제5조제6항 및 제12조제4항). 법률 제 호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6항 중 "국토교통부령"을 "대통령령"으로 한다. 제12조제4항 중 "국토교통부령"을 "대통령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) ①	제5조(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5항에 따라 시·도지사	6
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	
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	
을 때에는 <u>국토교통부령</u> 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	
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
제12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)	제12조(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	4
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	
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	
때에는 <u>국토교통부령</u> 으로 정하	<u>대통령령</u>
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	
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	
다.	